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 - 186 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㈜제이엠씨자산운용(舊 ㈜알디자산운용)

2. 조치내용

○ **(금감원 원안)**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'자본시장법')」 제85조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하여 ㈜제이엠씨자산운용에 과태료 30백만원 부과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

○ 회사는 ㉮ 및 ㉯펀드의 집합투자규약(신탁계약서)상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「벤처기업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비율(이하 '벤처신주비율')을 자산총액의 □% 이상, 이를 포함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비율(이하 '벤처투자비율')을 자산총액의 □% 이상으로 하고, 동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 마다 각각의 평균 비율을 유지하도록 제한하였으나,

- ㉮ 펀드는 20XX.XX.XX. 최초로 요건을 달성한 이후, 20XX.XX.XX.~20XX.XX.XX. 기간 중의 벤처신주비율이 최소 투자비율인 □%에 미달(총 □회), 벤처투자비율이 최소 투자비율인 □%에 미달(총 □회)하였으며,

- ㉯ 펀드는 20XX.XX.XX. 최초로 요건을 달성한 이후, 20XX.XX.XX.~20XX.XX.XX. 기간 중의 벤처투자비율이 최소 투자비율인 □%에 미달(총 □회)하는 등 집합투자규약에 규정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한도를 각각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□「자본시장법」 제85조 제8호
□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87조 제4항 제1호